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31

발의연월일: 2024. 9. 30.

발 의 자: 문진석·서영석·이정문

이연희 • 복기왕 • 이재관

강훈식 · 송옥주 · 김교흥

조정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사용 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되, 신규 자동차의 공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6개월의 범위에서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인해 자동차 제조사가 중형 택시 차량의 국내 생산을 중단하고 해외 생산분을 역수입하여 국내 수요에 대응하기로 함에 따라 택시 차량의 공급이 지연되는 경우 이전보다 그 기간이 한층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자동차 제조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자동차를 공급하는 때까지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3항).

법률 제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3항 중 "6개월의 범위에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를 공급하는 때까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도지사는 자동차의 제	3
작・조립이 중단되거나 출고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공급하는 것이 현저	
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u>6개월</u>	대통령
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차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
령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할 수	차를 공급하는 때까지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